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9. 8 선고 2021가단1046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8. 18.

판 결 선 고 2021. 9. 8.

## 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4,834,010원 및 그중 7,445,868원에 대하여는 2020. 10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2020. 1. 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3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가. 피고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이순형

별지